



제 41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654호)

2024.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어업법인 통계조사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2. 제 출 일 : 2023. 11. 30.
3. 회 부 일 : 2023.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법인조사의 경우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제114049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통계조사 및 자료요청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어업법인 통계조사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장에게 법인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6(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법인
등록번호

2. 사용 목적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통계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업법인 조사(국가승인통계 제 114049호)를 통계청에서 이관받아 실시하고 있음¹⁾.

그런데 통계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법인세 자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 하면서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자료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통계 조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국세청은 개정안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정보”는 자료 제공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사용 목적인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인등록번호만으로 과세정보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자료 제공 요청 문서에 법인명 등 법인의 인적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5

1) 현재 총 25,605개의 농업법인(2021년 기준)과 5,736개의 어업법인(2023년 기준)이 있으며, 이 중 어업법인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